

제4회 KRIC 기후 리더십 아카데미

배출권거래 할당방식 및 할당량 산정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탄소가치연구실 김이준 주임연구원
kyj@kric.re.kr / 033-259-0130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량 산정

Contents

● CHAPTER 1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1. 배출허용 총량규제
2. 할당대상 분류(부문/업종)
3. 할당방식 GF & BM
4. 유상할당 / 무상할당

● CHAPTER 2
할당량 산정방법

1. 사전할당량 산정방법
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3.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K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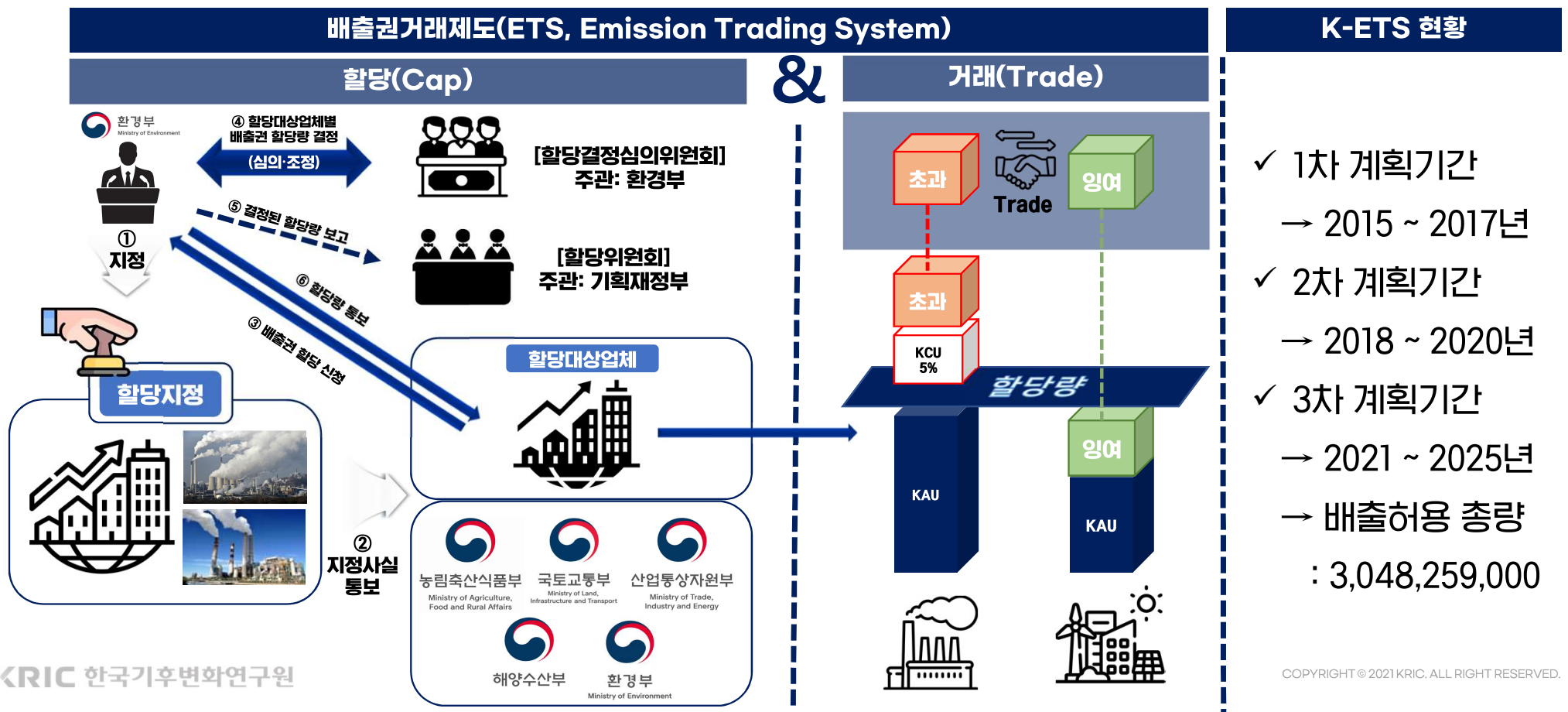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1 배출허용 총량규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배출허용 총량규제방식 적용

NDC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이행기간 별 배출 허용량을 지정 후 허용량에 따른 기업들의 초과분과 잉여분 거래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2 할당대상 분류(부문/업종)

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지정·고시 시 해당업체의 부문 및 업종 병기)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부문별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구분	
① 전환	② 산업
③ 수송	④ 건물
⑤ 폐기물	
⑥ 공공·기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 7

관계부처 합동

업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CI)의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체 및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 125,000 t·CO₂eq ↑ → 25,000 t·CO₂eq 이상인 사업장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업종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발적 참여 또는 신규 진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I 소분류 기준으로 추가·분류하여 3계획기간에 포함
※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개 업종 589개 업체 →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69개 업종 685개 업체(2023.2.2 기준 736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업체의 분류와 다른 부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업체가 속한 부문·업종**으로 적용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부문업종에 따라 ETS 적용대상에 포함
-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부문·업종 지정 후, **계획기간 적용 중에는 변경 불가**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3 할당방식 GF & BM

배출권 할당방식 **GF**(Grand Fathering, **배출량 기준**) / **BM**(Bench Mark, **배출효율 기준**)

GF : 과거 배출 실적을 근거로 배출권 할당 / **BM** : 단위 활동자료량 당 배출량 등의 실적자료를 국내 동종 사업장·시설과 비교하는 방식



법률 시행령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1항 환경부장관은 (...) 각 호를 고려하여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4호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6호 단위 활동자료량 당 (...)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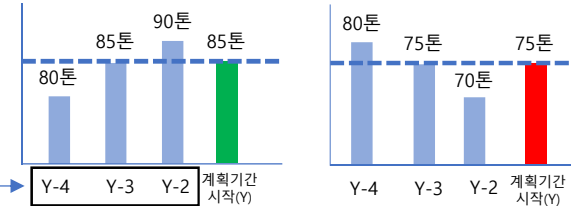
1항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GF

과거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 과거 배출량 多 기업 > 할당 받는 배출권 ↑
- ✓ 실질적 형평성 달성 X → 할당의 용의성 O



BM

활동자료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 업종 평균 생산량 대비 배출량을 **기준점(Benchmark)**로 활용

$$\text{BM 계수} = \frac{\text{적용 부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t\text{-CO}_2\text{-eq})}{\text{적용 부문의 활동자료량}(MWh, GJ, \text{ton}\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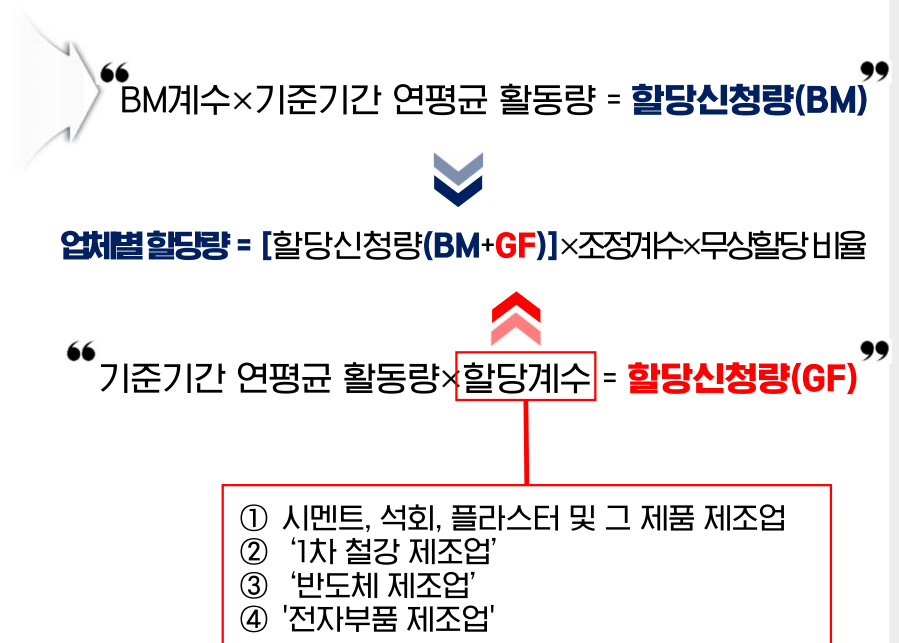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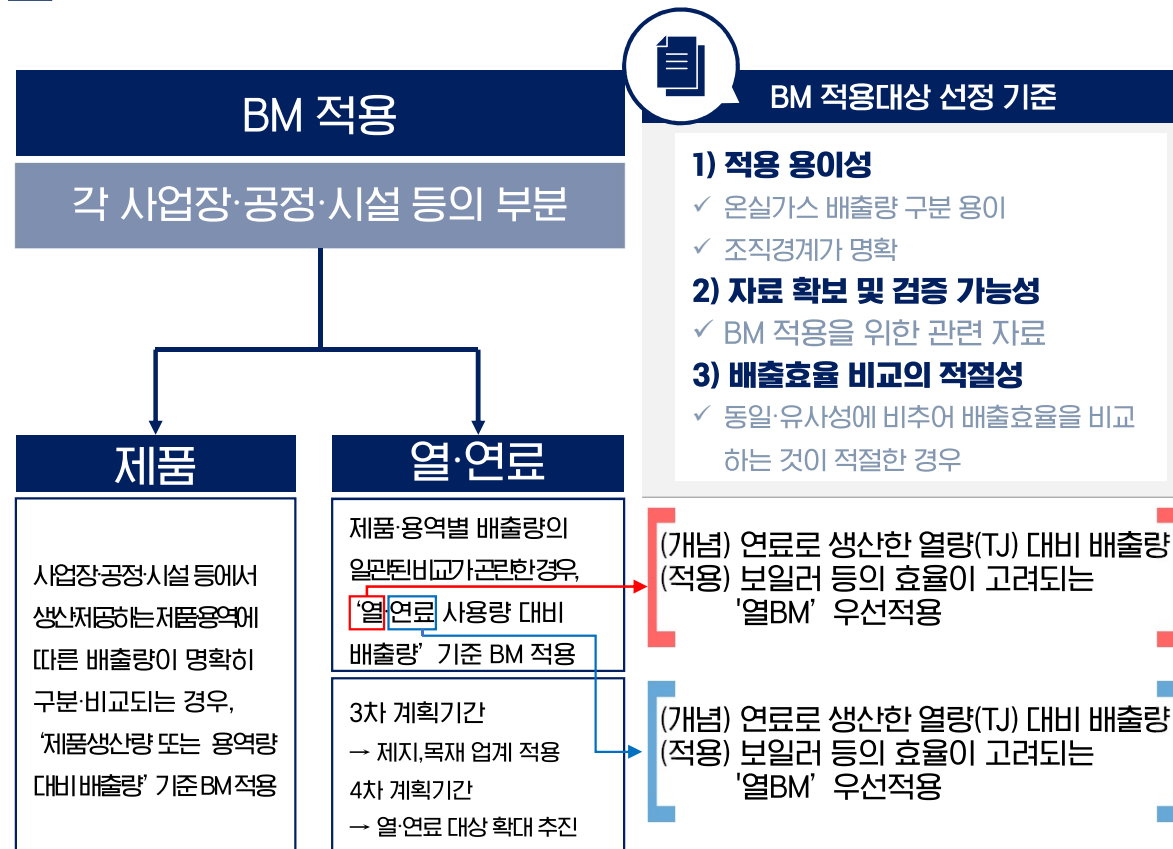
- ✓ 기준점(Benchmark)보다 생산량 대비 배출량이 적은 업체(배출 효율 좋은 업체)에게 더 많은 배출권 할당
- ✓ 배출권거래의 목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할당 방식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3 할당방식 GF & BM

고효율 사업장·공정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BM 적용 확대** → 형평성 제고 및 감축투자 유도

1차 기간 3개(정유, 시멘트, 항공) → 2차 기간 7개(1차+발전,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폐기물) → 3차 기간 12개(2차+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3 할당방식 GF & BM

		제품	적용대상	BM 계수
제품 BM	전환	화석연료 발전시설 및 지역냉난방 사업장의 전력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급발전기 중 화석연료 발전시설 ✓ 전력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속한 사업장 중 지역 냉난방 사업장 	석탄: 0.787414821 t·CO ₂ -eq/MWh 석탄외: 0.399743656 t·CO ₂ -eq/MWh
		화석연료 열병합발전 및 지역냉난방 사업장의 열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장 ✓ 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속한 사업장 중 지역냉난방사업장 	0.041471864 t·CO ₂ -eq/GJ
		산업단지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장의 전력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 또는 열-전력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속한 사업장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사업장 	0.7530864 t·CO ₂ -eq/MWh
		산업단지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장의 열 공급		0.09375877 t·CO ₂ -eq/GJ
	산업	석유 정제공정의 제품 생산	✓ 석유 정제시설 및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 포함	0.0040337144 t·CO ₂ -eq/CWB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전체	0.32644755 t·CO ₂ -eq/ton
		방향족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방향족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체	0.15989477 t·CO ₂ -eq/ton
		부타디엔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체	0.18726718 t·CO ₂ -eq/ton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티렌 모노머를 생산하는 공정의 전체	0.44755891 t·CO ₂ -eq/ton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	✓ 회색클링커 소성시설(Kiln)의 고정연소 배출활동 및 공정배출활동	0.80007638 t·CO ₂ -eq/ton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소결광 생산공정의 전체	0.278873861 t·CO ₂ -eq/ton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코크스 생산공정의 전체	0.8702921 t·CO ₂ -eq/ton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선철 생산 공정의 전체	0.42872757 t·CO ₂ -eq/ton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공정의 전체	0.31824712 t·CO ₂ -eq/ton
	수송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제주 노선 운항	✓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제주 노선의 이동연소 배출활동	0.0015067796 t·CO ₂ -eq/ton-km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내륙 노선 운항	✓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내륙 노선의 이동연소 배출활동	0.002147951 t·CO ₂ -eq/ton-km
	건물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업장의 용역 제공	✓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업장	0.14427115 t·CO ₂ -eq/m ²
	폐기물	공공하수처리 사업장의 외부전력 사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중 시설 규모가 500m ³ /일 이상인 시설이 속한 사업장	0.588679 t·CO ₂ -eq/ton
연료 BM	산업	제지, 목재 업계의 바이오매스 고정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제품 제조업' 및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하는 시설 	34.8856 t·CO ₂ -eq/TJ
		제지, 목재 업계의 비바이오매스 고정연소		56.3399 t·CO ₂ -eq/TJ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03 할당방식 GF & BM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시장 운영규칙」제1.1.2조 제1호에 따른 중앙급전발전기 중 화석연료 발전시설 - 다만, 「전력시장 운영규칙」부칙('09. 12. 31.) 제3조에 따른 서울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해당 발전소의 사업장(이하 이 표에서 “3개 열병합발전사업장”)) ▶ 「집단에너지 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전력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속한 사업장 중 「집단에너지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장 			
적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의 전력 생산에 따른 고정연소 배출활동* 및 대기오염방지설비(탈황, 탈질설비 등)의 직접배출활동* 명세서 상 이산화탄소 포집·이동에 따른 배출량 차감이 있는 경우 반영 - 3개 열병합발전사업장 및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내 연료전지의 직접배출활동 포함 - 적용 제외 : 적용대상 내 수전전력 			
활동 자료	<p>전력판매량(MWh)</p> <p>※ 활동량 산정시 고려사항 일반수용가 전력판매량 + 한전 및 한전거래소 판매량 - 한전 및 한전거래소 수전량 + 내부소비량 _{1-배전손실율}</p> <p>* 배전손실율 : (' 17년) 2.02%, (' 18년) 2.01%, (' 19년) 2.00%</p>			
BM 계수	$\frac{\text{적용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t\text{-CO}_2\text{-eq})}{\text{적용부분의 활동자료량}(MWh)}$	주연료	2021~2023년도	2024~2025년도
		석탄 외	0.787414821	0.708673339
		석탄	0.399743656	0.682188923 0.454511353

I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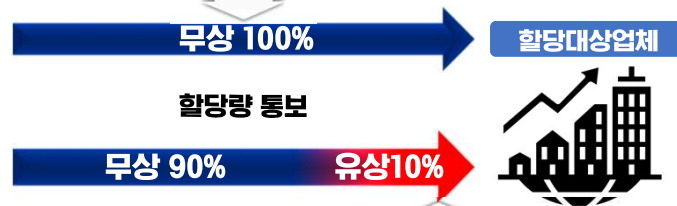
04 유상할당 / 무상할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은 **무상할당량(90%)**과 **유상할당량(10%)**로 구성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0.2% 이상인 업종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무상할당 대상 및 업체의 기준)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0.2%이상인 업종

- ① 지방자치단체 / ② 초·중·고등 학교
 ③ 의료기관 / ④ 대중교통운영자



비용발생도 :

$$\frac{\text{해당업종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_2\text{-eq)} \times \text{기준기간 배출권 평균 시장가}}{\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원/년)}}$$

무역집약도 :

$$\frac{\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수입액)(원/년)}}{\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수입액)(원/년)}}$$

21,239원 적용

유상할당 비율 :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의 10% 이상** 유상할당 원칙

※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등)

- ③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90 범위에서(...)
 ④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로 할당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시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II 할당량 산정방법

01 사전할당량 산정방법

해당 이행년도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해당 이행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M+GF) + 기준년도 관리업체 초과감축량 + 설비기술 도입에 따른 초과감축실적 - 관리업체 목표 초과배출량 - 할당계획내 제외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표1-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 ✓ 해당 이행년도의 업체별 할당량(F_i)은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이행년도의 업체별 할당량은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i = [(EE_{GF} + EE_{BM} + EE_{extra_red_mean} + EE_{red_mean} + EE_{etc_red_mean} - HE_{extra_emi_mean} - EE_{etc_emi_mean})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무상할당 비율}$$



EE_{GF} , EE_{BM} : 업체의 GF(과거실적기반) 및 BM(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EE_{extra_red_mean}$: 업체가 기준년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 감축량

EE_{red_mean} :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서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EE_{etc_red_mean}$: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배출권 수요 / 조기감축실적 /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가 경쟁력 / 시설 투자 등이 NDC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II 할당량 산정방법

01 사전할당량 산정방법

해당 이행년도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해당 이행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M+GF) + 기준년도 관리업체 초과감축량 + 설비기술 도입에 따른 초과감축실적 - 관리업체 목표 초과배출량 - 할당계획내 제외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표1-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 ✓ 해당 이행년도의 업체별 할당량(F_i)는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이행년도의 업체별 할당량은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i = [(EE_{GF} + EE_{BM} + EE_{extra_red, mean} + EE_{red, mean} + EE_{etc_red, mean} - HE_{extra_emi, mean} - EE_{etc_emi, mean})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무상할당 비율}$$



$HE_{extra_emi, mean}$: 업체가 기준년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EE_{etc_emi, mean}$: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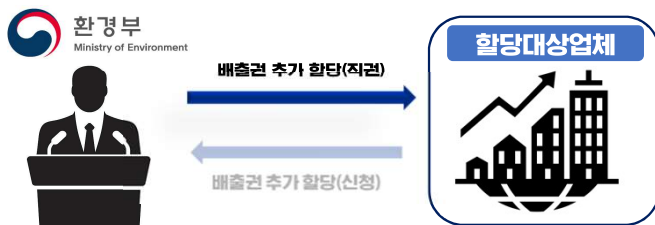
배출권 사전할당 시 각 부문·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이행년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의 총합이 각 이행년도의 해당 부문·업종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계수

각 이행년도의 해당 부문업종별 할당량
각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들의
이행년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의 총합**

II 할당량 산정방법

0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환경부장관의 직권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1항]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할당

→ 할당계획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 가능



[시행령 제27조 2항]

① 사업장 신설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가 배출된 경우

② 사업장 내 시설 신설·증설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내 시설을 신설·증설하여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사전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③ 그 외(6) - 제약발전량 증가, 집단에너지 사업장 열공급량 증가, 항공기안전운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대중교통 및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가연성 폐기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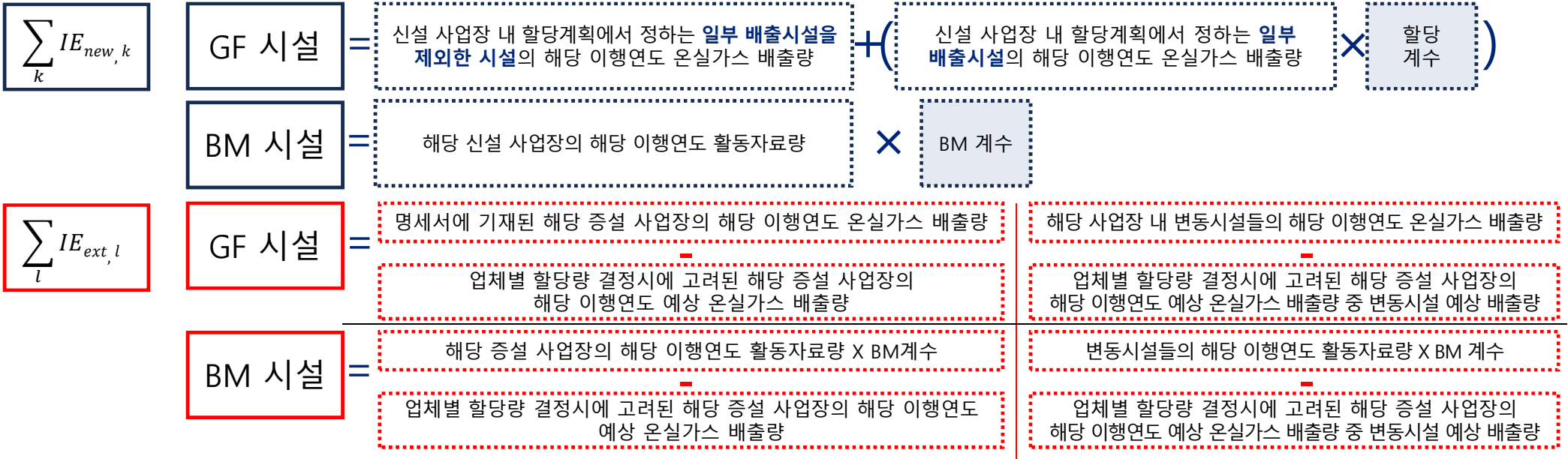
II 할당량 산정방법

0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 신청(신설)

환경부 장관의 직권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3호 및 시행령 27조 1항

$$F_{added} = \left(\text{사업장 신설} + \text{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 및 증설} \right) \times \text{조정계수}$$

$$F_{added} = \left(\sum_k IE_{new, k} + \sum_l IE_{ext, l} \right) \times AF$$



둘중 작은것

II 할당량 산정방법

0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 신청(전력계통 & 열 공급량 증가)

환경부 장관의 직권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3호 및 시행령 27조 1항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F_{added}

$$F_{added} = \sum_k [\text{해당발전시설}(k) \text{의} (\text{해당이행연도} - \text{기준기간 연평균}) \text{제약발전량} \times \text{GF 기준 적용 사업장}] \times AF$$

기준기간 연평균 원단위
BM 기준 적용 사업장 BM 계수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량 F_{added}

- ✓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
-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혹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공급량 제외

GF 시설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열 공급으로 인한 - 외부에서 구·매공급된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열 공급으로 인한 - 외부에서 구·매공급된 열에 의한) 해당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BM 시설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이행연도 활동자료량] × BM_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 × BM_k] × AF

II 할당량 산정방법

0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 신청(항공기운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의 직권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3호 및 시행령 27조 1항

항공기운항 F_{added}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량

$$F_{added} = (\text{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text{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AF$$

공공하수처리시설 F_{added}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위한 개선공사로 인한 추가 할당량

$$F_{added} = (\text{이행연도 온실가스 공정 배출량} - \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공정배출량}) \times AF$$

II 할당량 산정방법

02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 신청(대중교통 운행 확대 &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환경부 장관의 직권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3호 및 시행령 27조 1항

대중교통 & 화물 F_{added}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

$$F_{added} = \sum_k (E_k - H E m e_{an, k}) \times AF$$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가연성 폐기물 F_{added}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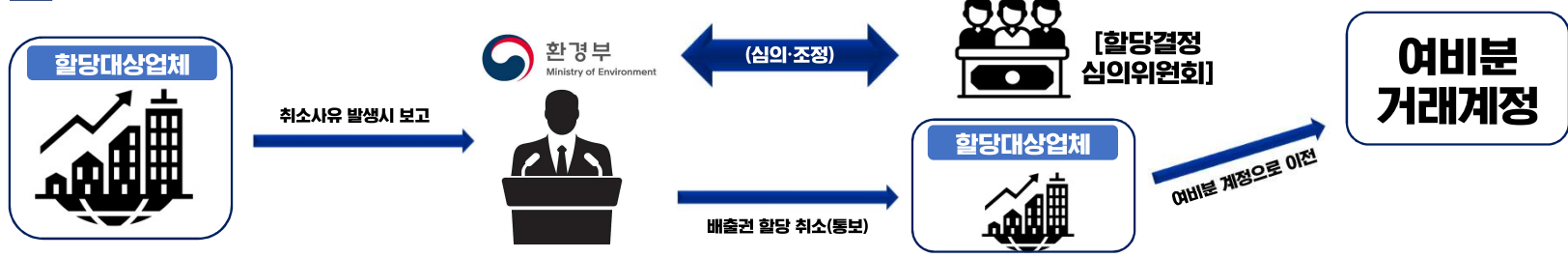
$$F_{added} = \sum_k (E_k - H E m e_{an, k}) \times AF$$

[해당 시설(k)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II 할당량 산정방법

03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배출권 취소 사유 발생시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만 해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제6항



[시행령 제17조 1항]
 ①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취소
 → 할당계획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 가능
 ※ 할당계획 변경사례 (2023.11)
 배출권 3차계획기간 중 NDC 상향(2018대비 40%)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1,300만 t 감소
 배출허용총량 30억 4800만 t → 30억 3500만 t

②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
 1) 해당 연도일 사업장 폐쇄경우 : 폐쇄일부터 이행연도 말일까지 남아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배출권 전부
 ③ 시설 가동중지, 정지, 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④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할당을 받은 경우
 ⑤ 할당지정 취소 경우(폐업, 해산 / 사업장 분할 양도 등)

잔여 배출권 < 이전량
 해당 및 다음 계획기간
 배출권 이전
 ※ 명령일로부터 1개월

II 할당량 산정방법

03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 업체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

배출권 취소 사유 발생시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만 해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제6항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 취소량 :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frac{\text{해당 이행연도 폐쇄일} \sim \text{연말 잔여일수}}{\text{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 취소량 :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정지하지만 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할당 취소량

GF 시설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frac{\text{해당 이행연도 폐쇄일} \sim \text{연말 잔여일수}}{\text{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 - 작은것

BM 시설 - 작은것

- ✓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AF
- ✓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 이전받은 사업장의 BM 계수) - 작은것 -)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AF
- ✓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 이전받은 사업장의 BM 계수

II 할당량 산정방법

03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 가동중지·정지·폐쇄

배출권 취소 사유 발생시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만 해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제6항

가동중지정지폐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할당 취소량

GF 시설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X AF)]

BM 시설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X BM계수 X AF)]

II 할당량 산정방법

03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 사실과 다른내용의 할당 & 지정 취소

배출권 취소 사유 발생시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만 해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제6항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 할당 취소량

할당 취소량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 받은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지정취소 ① 계획기간 중 업체가 **폐업, 해산 등의 사유로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 취소량

지정취소 ② 업체가 분할하거나 양도등의 사유로 **연평균 온실가스 총량 25,000tCO₂-eq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

정취소 ③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업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취소 ④ 파산, 영업 취소 등으로 **영업을 지속 못하는 경우**

할당 취소량 :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이후 이행연도 배출권 전체

Q&A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준 주임연구원 | kyl@kric.re.kr

